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 279 호           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15년 월 일<br>(제 회) |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충 청 북 도 지 사   |
| 제출연월일 | 2015년 10월 30일 |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#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279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15년 10월 30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충북도민대상 수상자 및 명예도민의 입장료 면제로 충청북도 및 청남대 이미지 제고
- 체험·연수시설의 사용 증가에 따른 시설 사용료 조정

## 2. 주요내용

- 충북도민대상 수상자 및 명예도민의 입장료 면제(안 제4조제10항)
- 본관 내부촬영 기본료 조정, 강당·세미나실 등 사용료 조정(안 별표3)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## 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충북도민대상 수상자 및 명예도민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청남대 시설 사용료(제8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| 시설명 및 사용구분  | 장소             | 사용료              | 비 고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
| 본관 내부촬영     | 1층<br>2층       | 500,000/5시간      | · 드라마, 영화, 광고(CF) 촬영<br>※ 내부촬영 후 외부촬영은 별도 사용료 없음 |
| 외부촬영        | 청남대 내          | 100,000/1시간      | · 드라마, 영화, 광고(CF) 촬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획전시관       | 대통령기념관<br>(별관) | 50,000/일         | 냉·난방비 별도   |
| 세미나실        |                | 30,000<br>1회/2시간 |  |
| 회의실         |                | 20,000<br>1회/2시간 |  |
| 이벤트실        |                | 50,000/2시간       |  |
| 강당          |                | 50,000/2시간       |  |
| 웨딩 촬영       | 청남대 내          | 100,000          | 승용차 2대(5명 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야외 결혼식장     | 헬기장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하객 1인당 단체입장료에 준한 사용료 징수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통령기념관 세미나실 | 대통령기념관         | 500,000/일        | 냉·난방비, 세탁비 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야간 사용료는 100% 할증

■ 냉·난방비 기준

- 세미나실(1회 1시간 기준) : 난방비 40,000원, 냉방비 30,000원

■ 가산금 적용 : 1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요금의 20% 가산

■ 시설 사용료는 위 기재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, 그 밖에 명기되지 아니한 시설 사용료는 상호협약에 따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제4조(입장료) ① (생 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.</p> <p>1. ~ 9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10.</u> (생 략)</p> | <p>제4조(입장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0. 충북도민대상 수상자 및 명예도민</u></p> <p><u>11.</u> (현행 제10호와 같음)</p> |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 시행규칙

제10조(예우) ① 조례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도민대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충청북도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·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
2. 충청북도 설치·운영("위탁시설"을 포함한다) 시설물 입장료, 주차요금 감면 등
3. 도민대상 수상자의 신분증 등 제작·배부
4. 그 밖에 도민대상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분증은 별표 3과 같이 제작하여 수여한다.

### □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

제7조(권리의무)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권리행사 및 의무분담을 할 수 있다.

1. 도유 및 시·군유재산과 공공시설의 무료(감면)이용 또는 우선이용
2. 도, 시·군으로부터 균등하게 각종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
3.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, 시·군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